

담양군의회 공고 제2025 - 30호

담양군 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 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5. 6. 11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 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담양군에 거주하는 5·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민주명예수당을 지원하여, 민주·인권·평화 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·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을 예우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민주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- 5·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매달 40,000원의 민주명예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음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5. 6. 10. ~ 6. 15.(5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조례안	담양군 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5년 6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 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5·18민주화운동의 민주·인권·평화 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·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5·18민주유공자”란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2. “유가족”이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3. “민주명예수당”이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5·18민주유공자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민주명예수당의 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부에 5·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되,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.

제4조(민주명예수당의 지급) 담양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5·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매달 40,000원의 민주명예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지급 절차 및 지급 방법 등) ① 민주명예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군수는 민주명예수당의 지급 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민주명예수당은 신청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하되, 매월 25일에 지급한다.

④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.

제6조(지급의 중지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주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한다.

1.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
2. 지급대상자가 수급을 거부하는 경우
3. 관계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

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 중지된 민주명예수당은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.

제7조(변경신청) 민주명예수당 신청인 또는 그 유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
2. 다른 군으로 전출한 경우
3.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
4. 주소를 변경한 경우
5.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한 경우

제8조(환수조치)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민주명예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주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.

1. 민주명예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
2.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민주명예수당을 받은 경우
3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민주명예수당을 받은 경우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담양군 5·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신청서					처리기간 20일 이내	
유 공 자	성 명		주 소			
	구 분	사망, 부상, 기타	생년월일			
수 급 자	성 명		생년월일		유공자와 관 계	
	주 소	()				
신 청 인	성 명		유공자와 관 계			
	주 소	()				
수급계좌	금융기관		예 금 주			
			계좌번호			
「담양군 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5·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등을 신청합니다. 20 신청인 서명 또는 인						
담양군 읍·면장 귀하			실거주 확인		이장 (인)	
민 원 인 제출서류	1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					수수료 없 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5·18유공자(유족)확인원(공통) 2. 입금계좌확인정보(통장사본)(공통)					
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(입금계좌확인정보) 제공 동의서						
1.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(또는 직원)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					
2. 본인은 금융기관이 「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(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)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						
민원인						(서명 또는 인)
담 당 자 확인사항	○ 수급권자 주소 : ○ 군내 거주기간 : . . ~ . . ○ 5·18민주유공자 : 급					
확 인 자	소속	직급	성명	(서명 또는 인)		

[별지 제2호 서식]

담양군 5·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

지급 변동 신고서(제7조 관련)

유 공 자	성 명		주 소			
	구 분	사망, 부상, 기타		생년월일		
수 급 자	성 명		생년월일		유공자와 관 계	
	주 소	(☎)				
신 청 인	성 명		유공자와 관 계			
	주 소	(☎)				
신고사유	사망, 5·18민주유공자 자격상실, 기타					
본인은 위와 같이 담양군 5·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「담양군 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신고합니다. 20 . . 신고인 (인 또는 서명) 담양군 읍·면장 귀하						